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7 선고 2013가단5065706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3 선고 2014나638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7 선고 2013가단5065706 판결

### 전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

2. B

변론종결 2013. 11. 6.

판결 선고 2013. 11. 27.

### 주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51,217,135원 및 그 중 50,675,435원에 대하여 2013. 5. 3.부터 2013. 5. 28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아산시 C 공장용지 1,841m<sup>2</sup>에 관하여 2013. 3. 2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는 원고에게 51,217,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9. 12. 24.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50,000,000원, 보증기간을 2010. 12. 24.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(이후 보증기간이 2013. 12. 20.까지 연장되었),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. 12. 28. 신한은행으로부터 5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피고 A이 2013. 2. 27. 이자연체와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, 원고는 2013. 5. 3. 위 은행의 청구에 따라 피고 A이 연체한 원리금 50,675,4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대지급금으로 636,63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94,930원을 회수하였으며, 원고가 정한 2013. 5. 3.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%이다.

다.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. 3. 26. 피고 B와 사이에 그의 소유인 아산시 C 공장용지 1,841m<sup>2</sup>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이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. 3. 26. 접수 제174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51,217,135원(= 대위변제금 50,675,435원 + 대지급금 636,630원 - 대지급금 회수금 94,93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,675,435원에 대하여

대위변제일인 2013. 5. 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3. 5. 28.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**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**

#### **가. 사해행위의 성립**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위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, 원고가 실제로 2013. 5. 3.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또한, 사해행위에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,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.

나아가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,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.

#### **나.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**

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

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

을 제1 내지 13호증(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부산에서 'D'라는 상호로 전기, 전자제어 제조업을 영위해 온 피고 B는 2013. 경 E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한 사실, 그리하여 위 E은 2013. 2. 28.경 아산시 F에 있는 'G공인중개사'의 공인중개사 H와 'I공인중개사'의 공인중개사 J의 중개로 아산시 K 전 1,012㎡와 L답 377㎡(이후 위 각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)을 매수하고 2013. 4. 1.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, 이후 위 각 토지의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2013. 6. 17.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, 피고 B와 위 E은 2013. 4. 23. 아산시 K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기 전자 제어기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'주식회사 D'를 설립하여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해 현재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, 피고 B는 2013. 3. 25.경 위 공인중개사 J의 중개로 공장의 추가부지로서 위 각 토지와 공장의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,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, 계약금 3,500만 원은 이날 피고 A의 처인 M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, 잔금 3억 1,500만 원 중 6,500만 원은 2013. 4. 10. 피고 A에게 교부하고, 2억 원은 2013. 4. 23.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피고 A이 위 M 명의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,302,745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, 나머지 5,000만 원은 2013. 4. 23. 피고 A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, 피고 B는 2013. 4. 15.경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신축할 공장의 설계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 신축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, 한편,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는 친인척 내지 친분관계 기타 거래관계 등이 전혀 없었으며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위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는 압류 내지 가압류의 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과 일면식도 없던 피고 B가 실수요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

공장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 J의 소개로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고, 나아가 피고 B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, 피고 B는 피고 A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#### **4. 결론**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**판사김태은**